

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] <신설 2025. 7. 18.>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구분	선임대상	선임자격	선임인원
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(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)	가.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	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	1
	나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	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	1
	다.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	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	1
	라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	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	1